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0년 12월 23일 규칙 제447호
개정 2006년 7월 13일 규칙 제579호
개정 2007년 1월 5일 규칙 제59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년 3월 9일 규칙 제63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년 9월 30일 규칙 제6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년 3월 25일 규칙 제72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년 12월 9일 규칙 제74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년 4월 12일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년 3월 23일 규칙 제8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규칙 제840호
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6>

1.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 매월 1회
2. 시정발전유공 시민표창 : 매월 1회
3. 모범공무원 표창 : 연 4회
4. 시민의 날 기념 유공 표창 : 연 1회
5.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2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6>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주택국장·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일자리정책과장·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9. 3. 9, 2010. 9. 30, 2011. 12. 20, 2013. 3. 25, 2013. 12. 9, 2017. 4. 12, 2018. 3. 23, 2019. 2. 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7. 13]

제4조(포상에 대한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도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제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13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규칙 제59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3. 9 규칙 제63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0. 9. 30 규칙 제6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1 까지 생략

②2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②3 부터 ②7 까지 생략

부칙 <2013. 3. 25 규칙 제72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13. 12. 9 규칙 제74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7. 4. 12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하며,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3. 23 규칙 제8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2. 26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기획예산관”을 “도시주택국장·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